

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

(앞쪽)

소속		직위		성명			
(단위: 천원)							
본인과의 관계	재산의 종류	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	종전가액	변동액		현재가액	변동사유
				증가액 (실거래가격)	감소액 (실거래가격)		
▶ 토지(소계)							
				()	()		
▶ 건물(소계)							
				()	()		
▶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 및 항공기(소계)							
				()	()		
▶ 현금(소계)							
▶ 예금(소계)							
▶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(소계)							
▶ 증권(소계)							
▶ 채권(소계)							
▶ 채무(소계)							
▶ 금 및 백금(소계)							
				()	()		
▶ 보석류(소계)							
				()	()		
▶ 골동품 및 예술품(소계)							
				()	()		
▶ 회원권(소계)							
				()	()		
▶ 지식재산권							
▶ 합명·합자·유한회사 출자 지분(소계)							
▶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							
▶ 가상자산							
▶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							
총계							증감액: (가액변동:)

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등록의무자

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

작성방법

1. 소속·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

-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적지 않고, 본인과의 관계만 적으십시오.
-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.
-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·직계비속도 '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'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적은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.
-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'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'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등록제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.

2. 재산의 종류

-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.
- 토지
 - 임야·전·답·대지·잡종지 등을 적으십시오.
- 건물
 - 아파트·연립주택·단독주택·상가·빌딩·오피스텔·사무실 등을 적으십시오.
 - 아파트,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적고 대지면적은 적지 마십시오.
 - ※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.
-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 및 항공기
 - 광업권·어업권·자동차·항공기·선박·건설기계 등을 적으십시오.
- 동산
 - 현금·수표·예금(파생상품증거금 포함)·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·채권·채무·금·백금·보석류
 - 증권: 주식·국채·공채·회사채·백지신탁·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적으십시오.
 - 골동품·예술품: 도자기·서양화·동양화·서예·공예·수예·조각·칠기 등을 적으십시오.
 - 회원권: 골프회원권, 헬스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적으십시오.
 - 지식재산권: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·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.
 - 합명·합자·유한회사의 출자지분
-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
- 가상자산

3. 소재지·면적 등 권리의 명세

- ※ "재산변동사항 신고서"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,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.
- 합명·합자·유한회사의 출자 지분
 - 회사명, 출자금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, 변동신고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 사항을 적으십시오.
-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
 - 법인명·출연재산·보유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.
- 4. 종전가액: 종전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적으십시오.
- 5. 변동액: "재산변동사항 신고서"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, () 안에는 실거래가액을 적으십시오.
- 6. 현재가액: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적으십시오.

7. 총액

-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년대비 증감액을 적고 괄호 안에는 가액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을 적으십시오.
-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, 지식재산권,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변동분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.

8. 변동사유

- 매도·매입·상속·증여·유증·수용·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적고, 재산의 증감일자·증감경위·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'변동사유'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.
- 부동산에서 동산으로,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적으십시오.
- 예금, 증권 및 가상자산의 '변동사유'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(개인별 변동사유기재는 생략)하되, 개인별, 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으십시오.

9. 그 밖의 사항

-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적지 마십시오(친족성명, 연락처, 계좌번호 등).
-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됩니다.
-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와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-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.